

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7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3. 6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3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실 직제로 변경됨에 따라,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국장 직제의 임무 일부 개정이 필요
- 또한,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되는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(안 제3조)
 - 보병연대급 부대의 장을 보병여단급 부대의 장으로 변경
 - 국군기무부대의 장을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장으로 변경
- 나.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의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통합방위업무 부서장으로 변경(안 제7조)
- 다.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김포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(명칭, 실무위원회 의장 등)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,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되는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